



# 국가개혁위원회

## 목차

1. 국가개혁의회
2. 위원회 구성
3. 구성 절차
4. 2014 년 임시 헌법에 따른 국가개혁의회의 역할 및 권한
5. 2014 년 임시 헌법에 따른 개혁분야
6. 개혁의 목적
7. 국가개혁의회의 상임위원회
8. 헌법기초제정위원회
9. 헌법기초제정위원회 위원 명단
10. 2014 년 임시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 과정
11. 헌법개정안 작성 시한

## **국가개혁위원회**

2014년 임시헌법의 28조에 따라 국가개혁의회 의원은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250명 미만으로 구성하고 국왕의 제가를 받아 임명한다.

### **국가개혁위원회의선출방식**

1. 국가개혁의회의 173 명의 의원들은 정치, 행정관리, 입법및사법권, 지방행정, 교육, 경제, 에너지, 보건및환경, 대중매체,사회 그리고 기타 등으로 11 개 전문 분야출신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의원 선출을 위해 50 명 미만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위해 국가평화질서위원회에 제출한다.
2. 77 명의 국가개혁의회 의원은 각 도에서 5 명씩 추천하고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각 도별 1 명만 골라 선발한다.

국가개혁의회 의장



티얀차이 끼라난

국가개혁의회 제 1 부의장



보원씩 우완노

국가개혁의회 제 2 부의장



탓싸나 분텡

국회하원사무처 총장

국가개혁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짜레 판쁘르영

## 국가개혁위원회 위원회 구성

- 11 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수는 각각 7 명씩으로 구성되고 분야별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임명하고 소속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각 도별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은 76 개 지방의 도지사, 판사,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의 대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 방콕의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은 태국대학총장협회 대표, 민사재판소장, 방콕 부시장, 방콕 시민단체의 대표 그리고 방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 선출하는 절차

기간 : 50일

### 1 단계

- 국가개혁위원회 의원 구성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

### 2 단계

- 각 지방 및 방콕의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을 구성한다.
- 국가평화질서위원회는 11 개 각 분야의 의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선발을 위한 날짜 및 시간을 공포한다.

### 3 단계

- 중앙 지역의 11 개 분야에 적절한 의원 후보를 사회비영리 단체가 2 명 미만으로 추천하여 20 일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각 지방 및 방콕의 의원 선발위원회가 후보자를 5 명 미만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된다.

### 4 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처장이나 그 대리인이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10 일 내에 검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도별 5 명의 의원 후보자 명단을 국가평화질서위원회에게 제출한다.

### 5 단계

- 의원 선출 위원회는 각 분야별 50 명 미만의 혹은 그 절반 이상의 추천 대상자 명단을 국가평화질서위원회에 제출한다.

6 단계

-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을 250 명 미만으로 선발한다. 이들 중 각도별 행정구역 출신은 1 명씩으로 총 77 명이다.
- 선발한 국가개혁위원회 의원을 국왕에게 상신하고 제가를 받아 임명한다.

7 단계

- 칙령으로 공포한다.

### **2014년 임시헌법에 따른 국가개혁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1. 11 개 분야의 국가개혁위원회가 국가개혁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정치, 국무행정, 입법과 사법 과정, 지방행정, 교육, 경제, 에너지, 환경 및 보건, 통신, 사회 및 기타 부분으로 구성된다. 위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는데 헌법을 비롯한 행정법, 칙령 등과 같은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개혁위원회는 개정 법안을 작성하여 입법회의에 제출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고 만약 금융이나 헌법과 관련된 기본법의 경우 내각에 제출한다.

2. 헌법기초제정위원회에 헌법개정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 헌법기초제정위원회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2014 년 임시헌법에 따른 분야별 개혁**

국가개혁위원회가 연구하고 제안할 개혁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
2. 국무행정
3. 입법 및 사법 과정
4. 지방행정
5. 교육
6. 경제
7. 에너지
8. 보건 및 환경
9. 통신
10. 사회
11. 기타

### **개혁 목적**

1. 입헌군주제와 태국 사회에 적합한 민주적 통치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2.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3. 효율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 경제,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5. 정부의 기관이 국민들 모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 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다.

### 국가개혁위원회 상임위원회

국가개혁위원회는 각 분야별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모두 24 개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개혁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Mr. Prasarn Marukpitak 위원장

쁘라산 마룩피탁

2. 개혁을 하기 위하여 홍보한 특별위원회

Miss On-usa Lamliengpol 위원장

언우싸 람리양폰

3. 국민의 참석 및 의견을 기울여 듣는 특별위원회

Mr. Pracha Taerat 위원장

쁘라차 떼랏

4. 태국의 미래를 디자인 및 비전을 실행한 특별위원회

Mr. Suwit Maesincee 위원장

수윗 메씬씨

5. 헌법초안제정을 수행 및 제의한 특별위원회

Mr. Bhairote Brohmsarn 위원장

파이룻 프롬싼

6. 국가개혁위원회의 행정 조치 특별위원회

Mr. Thienchay Kiranandana 위원장

티안차이 끼라난

7.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혁한 상임위원회  
Ms. Saree Aongsomwang 위원장  
싸리 엄송왕
  
8. 과학, 테크놀로지, 연구, 혁신 그리고 지적 재산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Sakarindr Bhumiratana 위원장  
쌩까린 푸미랏
  
9. 체육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General Yuthasak Sasiprapha 위원장  
웃타쌩 씨씨쁘라파
  
10. 가치관, 예술, 문화, 도덕 그리고 종교를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Naovarat Pongpaiboon 위원장  
나와랏 풍파이분
  
11. 부정부패를 방지 및 정벌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Pramon Sutivong 위원장  
쁘라몬 수티웁
  
12. 노동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Lieutenant General Decha Punyaban 위원장  
데차 뿐야반
  
13. 사회, 공동체, 어린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Amphon Jindawantthana 위원장  
암폰 찐다왓타나

14. 대중매체 및 정보 통신 기술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Joompol Rodcumdee 위원장  
쭈뎀 럿담디
  
15. 자연자원 및 환경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Pramote Maiklad 위원장  
쁘라뎀 마이끄랏
  
16.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s. Porapan Punyaratabandhu 위원장  
폰판 분야랏판
  
17. 에너지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Tongchat Hongladaromp 위원장  
텅챗 흥라다롬
  
18. 농업, 산업, 통상, 관광 그리고 서비스를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Krirkkarai Jirapaet 위원장  
끄릭까라이 짜라뎀
  
19. 경제, 금융 그리고 재정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Somchai Richupan 위원장  
솜차이 리추판
  
20. 교육 및 인문자원 반절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Paron Israsena 위원장  
파롬 이쓰라세나

21. 지방 행정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Pongpayome Vasaputi 위원장

퐁파옴 와싸푸띠

22. 법률 및 사법 과정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Seree Suwanpanont 위원장

세리 수와나판논

23. 국무 행정을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Thirayuth Lorlertratna 위원장

티라윛 러룻랏

24. 정치 개혁한 상임위원회

Mr. Sombat Thamrongthanyawong 위원장

솜뱃 탐룽탄야윙

### 헌법초안제정위원회 (CDC)

#### **헌법초안제정위원회 구성**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이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 36명을 지명한다.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 총 36명은 국가개혁의회(NRC) 20명, 입법의회(NLA) 5명, 내각 5명,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에서 선출한 5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임명은 국가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로부터 15일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헌법초안제정위원회의 명단

1. Professor Borvornsak Uwanno  
부원씩 우완노  
위원장
  
2. Emeritus Professor Dr. Krasae Chanawongse  
끄라쎌 차나웡  
제1부위원장
  
3. Mr. Manich Sooksomchitra  
마닛 쑹쑹찐  
제2부위원장
  
4. Professor Suchit Bunbongkarn  
쑹찐 분봉칸  
제3부위원장
  
5. Associate Professor Nareewan Chintakanond  
나리완 찐따까논  
제4부위원장
  
6. Mr. Preecha Vajrabhaya  
쁘리차 왓차라파이  
제5부위원장
  
7. Mr. Choochai Supawongse  
추차이 쑤파웡  
제6부위원장

8. Mrs. Kanchanaratt Leevirojana  
간짜나랏 씨위룻  
위원회의 비서
  
9. Mr. Distat Hotrakitya  
디싸탓 호뜨라깃  
위원회의 비서
  
10. General Lertrat Ratanavanich  
룻랏 라따나와닛  
자문 위원회 및 위원회 대변인
  
11. Mr. Kamnoon Sidhisamarn  
캄눈 싯티싸만  
위원회 대변인
  
12. Lieutenant General Navin Damrigan  
나윈 담리간  
위원회 대변인
  
13. Mr. Pakorn Priyakorn  
빠껐 뿌라야껐  
위원회 대변인
  
14. Associate Professor Woothisarn Tanchai  
우티싼 탄차이  
위원회 대변인
  
15. Miss Supatra Nacapew  
쑤팻트라 나카파우  
위원회 대변인

16. Professor Prasobsook Boondech  
쁘라쑹쑹 분뎃  
자문위원회 위원장

17. Mr. Charoon Intachan  
짜룬 인타짠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18. Mr. Krit Kraichitti  
크릿 끄라이짖  
위원

19. Professor Charas Suwanmala  
짜랏 쑤완마라  
위원

20. Mr. Jumphol Sukhmon  
쑤뎡 쑤만  
위원

21. Mr. Jade Donovanik  
짖 토나와닛  
위원

22. Mr. Cherdchai Wongseree  
쑤차이 웅쑤리  
위원

23. Mrs. Thawilwadee Bureekul  
타원와디 부리꾼  
위원

24. Mrs. Thicha Na Nakorn

티차 너 나컨

위원

25. Lieutenant General Nakorn Sukprasert

나컨 쑥쁘라섯

위원

26. Professor Nakharin Mektrairat

나카린 맥뜨라이랏

위원

27. Professor Banjerd Singkaneti

반쭈트 씩카넛

위원

28. General Yodyuth Boonyatikarn

옛웃 분야티깐

위원

29. Mr. Buntoon Srethasirote

반툐운 셋타씨룻

위원

30. Mr. Pracha Taerat

쁘리차 떼랏

위원

31. Mr. Paiboon Nittitawan

파이분 나띠따완

위원

32. Mr. Mechai Viravaidya  
미차이 위라와이타야  
위원

33. Mr. Wichai Dittabhakdi  
위차이 틸따팍디  
위원

34. Assistant Professor Wutisak Lapcharoensap  
우티삭 랍짜른삽  
위원

35. Mrs. Somsook Boonyabanha  
솜썩 분야반차  
위원

36. Professor Anek Laothamatas  
아넥 라오탐탓  
위원

## 태국 (임시) 헌법 B.E. 2557 규정에 따른 헌법개정과정

### 헌법초안제정위원회의 설치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이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 36 명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국가평화질서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장
2. 국가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0명
3. 입법의회가 제시한 5명
4. 내각이 제시한 5명
5.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제시한 5명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 임명은 국가개혁의회 첫 번째 회의일로부터 15일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은 계속해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헌법초안제정위원회는 나머지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은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이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부터 15일 이내에 충원을 해야 한다.

###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접수

헌법개정에 있어서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기관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1. 국가개혁위원회 (국가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본회의를 열었을 때부터 60일 내에 헌법초안제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입법의회
3. 내각
4. 국가평화질서위원회
5. 국민
6. 관련된 기관

### 헌법개정안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헌법초안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1.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를 가진 국가인 태국.
2. 태국 사회에 적합한 입헌군주제 민주국가로서의 태국.
3.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점검하여 배척하는 효율적인 체계수립과 이것은 공익 및 국익을 위한 정부의 관리 및 통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한다.
4. 부정부패를 하거나 선거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인물이 향후 어떤 정치적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도록 이를 예방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 수립
5. 공직자( 특히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및 정당들)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건의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 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6.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법의 정의와 도덕, 윤리, 공정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 수립.
7.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수립.
8.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서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체계와 정부의 지출에 대한 감사 및 공개를 할 수 있는 체계 수립.
9. 새로운 헌법의 모든 중요한 원칙이 제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체계 수립..
10.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개혁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 수립.

뿐만 아니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들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기관들이라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헌법 개정안 초안 제정 시한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태국 임시헌법 B.E. 2557 (2014) 제 31 조 2항에 따라 국가개혁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120일 내에 헌법 개정안을 완료하여 국가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헌법초안제정위원회의

자격을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헌법초안제정위원회 구 헌법초안제정위원회의 임기 만료 일로부터 15일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자격이 만료된 구 헌법초안제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새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헌법개정안 작성이 완료된 후 진행 과정**

헌법 개정안 작성이 완료된 경우

1. 완성된 헌법 개정안을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받았을 때부터 10일 내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가개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헌법 개정안은 내각 및 국가평화질서위원회에 제출된다.

###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사항 제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개혁위원회 의원들은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과 건의가 완료된 때부터 30일 내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에 있어서 국가개혁위원회 총 의원들이 적어도 10분의 1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를 이미 요구하거나 찬성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에 대해 중복하여 제시하거나 찬성할 수 없다.
2. 내각과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헌법 개정안이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다.

###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건의 요청에 대한 심의**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제출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심의할 수 있다. 헌법초안제정위원회는 상황에 맞추어 헌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한 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개혁위원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 **헌법 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초안제정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안을 받았을 경우 헌법 개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본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개혁위원회는 헌법 초안을 다시 수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 초안에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고 헌법초안제정위원회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할 수 있다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개정에 대해 동의한 후에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은 국가개혁의 가결 후 30일 내에 국왕의 제가를 받기 위해 그 헌법 초안을 상신한다. 국왕의 제가를 받으신 후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은 새 헌법을 칙령으로 발표한다.

국왕이 헌법개정안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고 국가개혁위원회에 그 헌법개정안을 반려하거나 90

일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헌법개정안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개혁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완성시키지 못함으로써 만기되거나 그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소멸된 경우 국가개혁위원회 및 헌법초안제정위원회는 자격이 만료된다. 이어서 새로운 국가개혁위원회 및 새 헌법초안제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구 국가개혁위원회 의장, 구 국가개혁위원회 부의장, 구 국가개혁위원회 의원들 및 구 헌법초안제정위원들은 새 국가개혁위원회 의장, 새 국가개혁위원회 부의장, 새 국가개혁위원회 의원 및 새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헌법 개정안 초안 제정 과정(Timeline)

2014년 10월 21일	국가개혁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함.
2014년 11월 4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를 구성함.
2014년 12월 1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의 프레임워크를 제출함.
2014년 12월 1-10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의 프레임워크를 검토함.
2014년 12월 15-17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국가개혁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함.
2014년 12월 18-26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정함.
2014년 12월 19일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초안제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함.
2015년 1월 5일	태국 최고행정법원이 헌법의 초안을 작성함.
2015년 4월 17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처리 완료하고 국가개혁회의 의장, 내각,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제출함.
2015년 4월 26일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됨.
2015년 5월 16일	내각과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임.
2015년 5월 25일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초안제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임.
2015년 7월 23일	헌법초안제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개정 요청을 심의하고 국가개혁위원회에 제출함.
2015년 8월 6일	국가개혁위원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15년 9월 4일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이 개정된 헌법을 국왕의 제가를 받기 위해 상신함.